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12. 5 선고 2022가단2048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우

변 론 종 결 2023. 11. 7.

판 결 선 고 2023. 12. 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22. 6. 3. 접수 제66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와 보증금액 110,500,000원, 보증기간 2012. 12. 26.부터 2022. 12. 2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2012. 12. 26. D조합으로부터 1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을 받았다.

다. C는 2022. 6. 28.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지체하여 2022. 9. 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2. 10. 31. C를 대신하여 D조합에 94,318,86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2022. 12. 5. 기준으로 합계 116,667,586원이다.마. C는 2022. 6. 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7,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22. 6. 3. 접수 제6660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C는 2022. 12. 2.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합계 약 141,066,82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D조합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E은행에 대한 9,517,076원의 채무, 원고에 대한 53,930,102원, 144,168,451원의 각 채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8,470,000원의 채무, F조합에 대한 40,467,488원의 채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19,000,000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5,000,000원, 근저당권자 G, 채무자 C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도군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바, 이는 C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G이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91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C는 2022. 6. 3.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인 2022. 6. 28.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지체하여 2022. 9. 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점, ③ 원고는 2022. 10. 31.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 원고의 대위변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위사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G 명의의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감정인 H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은 108,813,9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가치가 남아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2. 5. 21.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22. 5. 12.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22차7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2. 6. 17.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C는 2022. 6. 3. 피고에게 원금 30,000,000원 및 이자 59,207,670원 합계 89,207,670원을 2023.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C로부터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사정을 알아본 결과, C가 암 진단을 받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용직 근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C에게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해 주고 2022. 1. 초경에는 C에 대하여 형사고소 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하였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C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G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C의 구체적인 채무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C의 변제자력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는 2012. 5. 21. C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에도 약 10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가 2022. 5.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지급명령을 받은 후 2022. 6. 3.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는 그 때로부터 약 1개월 이후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2022. 7. 20.경부터 E 주식회사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치기 시작한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G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이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담보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충분히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의문이 있는 점, ⑥ 피고는 2012. 5. 21. C에게 30,000,000원을 연 5%의 이율로 대여하였고, C로부터 2012. 7. 5. 1,500,000원, 2014. 2. 25. 700,000원, 2015. 하반기경 1,370,000원, 2020. 8. 3. 1,500,000원, 2022. 1. 24.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의 30,000,000원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약 15,000,000원임에도, C는 피고에게 89,207,670원(=원금 30,000,000원+이자 59,207,67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한 후 채권최고액이 107,000,000원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준

별지